

선임사외이사 선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임사외이사 선임내역을 공시합니다.

1. 선임내용

구분	성명	직위	선임일자
선임사외이사	진상근	사외이사	2020. 4. 1.

2. 선임사유

- 2020년 3월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정관 제32조 (1)항 “이사회는 매년 1인의 이사를 이사회 진행을 주재할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찬영형 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정관 제32조 제 (2)항 “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봉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이봉주 사외이사가 3월 26일자로 사외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임시이사회에서 진상근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함.